

담배소매업 폐업 공고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16일

예 천 군



1.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

상 호	영업소 위치	폐업일자	공고기간	비고
담암새마을구판장	예천군 호명면 담암길 64(담암리새마을회관)	2018.1.15.	2018.1.16.~ 2018.1.23.	제7조의2 제1항
노천	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227	2018.1.15.	2018.1.16.~ 2018.1.23.	제7조의2 제1항
세중슈퍼	예천군 예천읍 대창학교길 2	2018.1.15.	2018.1.16.~ 2018.1.23.	제7조의2 제1항
잡화	예천군 보문면 문래실길 98	2018.1.15.	2018.1.16.~ 2018.1.23.	제7조의2 제1항
잡화	예천군 유천면 고산길 53-1	2018.1.15.	2018.1.16.~ 2018.1.23.	제7조의2 제1항

2.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18. 1. 15. ~ 2018. 1. 23.

나. 대 상 자 :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

다. 접 수 처 :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(☎054-650-6857)

라. 구비서류

- 1)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(군청 비치) 1부
- 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3)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
- 4) 국가유공자증명서류,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인) 1부

3.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

가.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

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

나.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)이나,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

다.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